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216호(號) 1916(大正 5)년 8월 21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94호(號)

일본·만주 여객 연락운수[日滿旅客聯絡運輸]에서 여객이 세관검사(稅關檢査)에 입회(立會)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(留置)된 수하물(手荷物) 등의 취급(取扱) 수속(手續)은 아래[左]와 같이 정(定)하고, 1916(大正 5)년 9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(施行)한다.

1916(大正 5)년 8월 2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백작(伯爵) 데라우치 마사타케(寺內正毅)

- 여객(旅客)이 세관검사(稅關檢査)에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역(國境驛)에 유치(留置)된 수하물 및 여객보다 먼저 국경역에 도착(到著)한 수하물은 그 역(驛)에서 7일간(日間) 무료(無料)로 그것을 보관(保管)한다. 그 이후에는 당해(當該) 운수기관(運輸機關)이 정(定)한 보관료를 징수(徵收)한다.
- 전항(前項)의 수하물탁송자(手荷物託送者)의 소재(所在)를 알 수 있을 때는, 당해(當該) 운수기관은 즉시 수하물을 국경역에 보관하고 있는 취지(趣旨)를 탁송자에게 통지(通知)하고, 그 회답(回答)에 의거하여 이것을 처리(處理)해야 한다.
- 수하물탁송(手荷物託送) 후(後) 50일을 경과(經過)해도 운송(運送)에 관여(關與)한 어떤 운수기관에 대하여도 인도(引渡)한다는 청구(請求)가 없고, 권리자(權利者)도 확실히 알 수 없을 때는, 수하물의 보관운수기관(保管運輸機關)은 그 운수기관의 규정(規程)에 의하여 이것을 처분(處分)할 수 있다.